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률 제명 및 목적 규정의 변경〉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70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률 제명 및 목적규정 변경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홍기원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6. 10.
3. 회 부 일 : 2023.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이 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III. 검토의견

1. 법률 제명 및 목적규정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¹⁾

법률의 목적도 사업주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u>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u>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u>법인의 처벌</u>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u>중대재해 예방법</u> 제1조(목적) ----- ----- ----- -----<u>취급하는</u>----- ----- ----- --<u>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사항</u>-----.

1) 이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등 법률의 조문을 함께 개정할 수 있도록 안 부칙 제2조가 다른 법률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동 법률이 사업주 등의 처벌보다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 시설 등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의 예방 등에 주된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 법률의 목적과 내용, 제명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나 제명과 목적규정은 법률의 해석과 집행에서 지침이 되는 것으로, 제명 등의 변경이 시행 중인 법률의 의미를 크게 변화시키는 경우라면 법률의 집행 등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률 제정의 연혁과 취지 및 집행 현실 등에 비추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 현행법의 제정 연혁

-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1대국회에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기업 등이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 등을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해당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것임.

당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의원 등 45인)’ 등 총 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차례의 소위를 거친 후 2021년 1월 8일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발의되었던 법률안과 청원 모두가 제정하고자 하는 법률 제명에 ‘처벌’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처벌을 통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담보가 주된 입법취지였던 것으로 보여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연혁 >

구분	의안(청원)번호	일자	법률안
발의 법안	제2100977호	2020.06.1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4인)
	제2105290호	2020.11.1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의원 등 45인)
	제2105421호	2020.11.17.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탄희의원 등 11인)
	제2106019호	2020.12.0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2106436호	2020.12.14.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범계의원 등 12인)
청원	제20100013호	2020.09.22.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미숙 외 10만 인 국민동의)
대안	제2107249호	2021.01.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정 법률	2021.01.26. 공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법률의 제명과 목적의 적절성

- 법률의 제명은 알기 쉽고 간결하면서도 법률의 성격과 내용 등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²⁾ 목적규정도 법률의 입법취지와 핵심 내용을 종합적·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함.³⁾
- 현행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9조), 중대재해 발생 시의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도 규율하고 있으므로(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과 사업주 처벌 등을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3장 중대 시민 재해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2조	정의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처벌
제2장 중대 산업 재해	제3조	적용범위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2) 법률 제명의 기본원칙으로는 ① 알기 쉽고 간결할 것, ② 주요 규정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률과 혼동되거나 일반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없을 것, ④ 가능한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고 외래어 사용은 지양할 것 등이 꼽히고 있음.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74-75.

3) 국회사무처 법제실, 앞의 책, 239-240.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제2장 중대 산업 재해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장 보칙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처벌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 원 및 보고

○ 현재의 제명과 목적규정은 법률의 내용 중 사업주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강조한 것으로,

현행법이 중대재해의 예방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거나 강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법률 집행에 관한 사항

- 한편, 동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법률 적용이 유예되어 있었으나,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동법이 적용되게 되었음.⁴⁾

이에 따라 현재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한 FAQ 작성 및 배포, 현장방문 지도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⁵⁾

그러므로 개정안의 심사에는 제명 변경이 현장에 미칠 영향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에 총력 대응 의지 밝혀”, 2024년 1월 29일자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9일자 보도자료 참조

4) 관계부처 의견

- 법원행정처는 법률의 제명과 목적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 연혁, 전체적인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며, 다만 안 제2조는 사업주 등에 대한 의무사항의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그 외에 처벌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 등의 표현을 함께 기술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공감하나, 동법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입법 보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